

현장속으로
시민결의로

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 장
김현기

11/30
결재
2023. 11. 30
의장
#561



2023. 11.

서울특별시의회
의 사 담 당 관

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회부의안 : 총 1건 (조례안 1)

연 번 <small>(의안번호)</small>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<small>(소관 상임위원회)</small>	발의·제출일
1 (1480)	서울특별시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이에스지(ESG)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 -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를 규정함 (안 제2조) -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이행노력 의무를 규정함 (안 제7조) -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(안 제8조)	김혜영 의원 외 32명 (기획경제)	2023. 11.29.

2023. 11. 30
의장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(기획경제위원회)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1부. 끝.